











# 201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사회복지분야 정책

## 1. 아트신 팔니,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

■ 금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(의료급여) 적용을 받는 틀니(위전, 부분) 및 치과임플란트 대상자가 현행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.

\* 15.7.1 기준으로 145.6.7.1 이전 출생자

· 대상 연령이 낮아짐과 함께 외전 틀니의 경우 기존의 페레진 외전 틀니 외 금속상 외전 틀니도 건강보험(의료급여) 적용을 받게 됩니다.

\* 입원장과 달리는 부분 등이 금속구조물로 되어있는 외전 틀니로 금속구조물이 코발트 크롬 금속류에 대하여 금지 적용(이 외 금, 티타늄 등은 비금)

■ 국정과제 및 '14~'18' 건강보험성장기본계획에 따라 2016년 65세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으로,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

## 2. 장애인, 임산부 등 사회적 관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

■ 장애인, 임산부 등 사회적 관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어 건강보험 혜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.

· 고위험 임산부와 입원치료 및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상부담이 20%에서 10%로 경감됩니다.(15.7.1)

\* 대상 : 35세 이상의 임신부로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35세 미만의 임신부로서 해당 질환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가정 내에서 호흡보조기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하여 고위험보조기 입대비율을 건강보조기 요양비에서 지원합니다.(15.11월 예정)

· 현재 제1형 당뇨병 대상으로 지원 중인 혈당측정감시기 이외 팔수 소모품에 대하여 지원을 확대하고, 인슐린 주사를 투여하는 제2형 당뇨병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합니다.(15.11월 예정)

· 또한, 장애인보장구 지원목록을 확대하고, 지나치게 협소한 보장구의 기준금액과 금액기준을 확장합니다.(15.11월 예정)

■ 이에 따라 장애인, 임산부 등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, 팔수 재기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확대로 볼 필요가 의료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

## 3.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

■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현실화하고,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의 탈수급 유지를 강화하기 위하여, '15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합니다.

· 단일화 회자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를 개편하여, 생계·주거·의료·교육 등 급여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을 다듬화합니다.

- 이를 통해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상대적 불평등 현상을 고려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기준에 중위소득+을 반영합니다.

\* 전체기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, 한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수준

(급여별 세부 개편 방안 개요)

현 행		개편 후	
선정기준	급여수준(내용)	선정기준	최저보장수준(내용)
취자생계비	최저생계비의 80%수준 현금급여(연금급여 등 제외)	중위소득 28% 수준	복지부
	필수의료서비스의 낮은 본인부담률(연금급여)	증위소득 43% 수준	국토부
	수업료 교과서 등(현금급여)	증위소득 40% 수준	현행과 동일
		증위소득 50% 수준	교육부

· 급여체계 개편과 함께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소득기준을 현실화하여, 제도의 사회적자리를 확장합니다.

\* 부양의무자 소득기준('15년) : 수급자 1인, 부양의무자 4인 가구일 경우 (기준) 298만 원(423만원), 노인·장애인 등 최악계층인 경우 → (개선) 485만원 이상이면 부양능력 있다고 판단

-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하여 생계비가 추가로 소요(의료비, 장애용구)되는 점을 반영하여,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 소득·재산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며, 교육급여에 대하여는 교육이 기회균등 및 미래세대에 대한 부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합니다.

\*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맞춤형 급여 개편으로 지원 대상자가 증가하고 지원수준이 강화되는 학교, 일할 능력 있는 분들은 소득이 증가하여도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어 일을 통한 자립의욕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## 4. 장애를 없는 생활환경 인증' 제도 외무화

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건축물·종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은 '장애를 없는 생활환경 인증'을 의무적으로 받게 됩니다.

\* 청사,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종종이용시설

· 장애인, 노인, 임산부, 영유아를 풍부한 사람 그리고 어린이 등은 '장애를 없는 생활환경 인증'을 통해 공공건물 및 종종이용시설 등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.

## 5. 장애인전용주차구역·주차표지 운영·관리 강화

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한 표지 차량을 표시하는 '장애인자동차표지'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'로 명칭을 변경하고, 현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' 발급대상은 법에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.

■ '양성평등기본법'은 여성에 대한 인식 및 관련 법·제도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자 '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'을 전부 개정한 것으로,

· 과거 '여성발전기본법'을 통해 낙후된 여성의 지위를 끌어올리고 여성 능력개발을 통하여 여성발전에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.

· '양성평등기본법'은 기존 여성정책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등등한 권리와 책임,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.

## 9. 청소년지도사·상담사 자격취득 요건 강화

■ '청소년 기본법' 개정('15.6.22 공포, '15.9.23 시행)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·상담·활동 등을 전담하는 청소년지도사·상담사에 대한 자격취득 요건이 대폭 강화됩니다.

· 동법의 시행으로 급여 이상의 월급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아동학대죄,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청소년지도사·상담사 될 수 없습니다.

■ 이와 함께 청소년지도사·상담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는 3년간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없으며,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.

## 청소년 기본법 개정 내용

### ■ 청소년지도사·상담사 결격요건(제21조 및 제22조)

\* 미성년자,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\*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
\* 급여 이상의 월급을 선고받고 그 징계가 끝나거나 징계를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(2년→3년으로 강화)

\* 급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징계가 끝나거나 징계를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\* 아동복지법 제7조제1항의 제·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법,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2항의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혐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혐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징계가 끝나거나 징계(신赖以生存)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(포함) 징계가 유예·제재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(신赖以生存)

### ■ 청소년지도사·상담사 자격증(제21조제2 및 제22조)

\* 각각 결격사유,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각각 취득 및 각각증 양도시 판도시 각각 취소(제29조정 · 강행규정)

### ■ 청소년지도사·상담사 부정행위자 제재(제21조의3 신설)

\* 자격검정 부정행위자는 3년간 각각검정·용지자격 정지

## 10.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사업주 인센티브가 강화됩니다.

■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이 이어집니다.

·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시 1인당 월 지원금이 대기업은 10→20만원, 중소기업은 20→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.

- 또한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육아휴직 허용시 지원금을 사용 1개월 후 즉시 1개월 치 지원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임여분(최대 11개월분)은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.

- 다만, 육아휴직 허용시 지원금은 국가·지방자치단체 등에 대상 지원금을 폐지하고 근로자 청와 이상 대기업의 경우 월 10→50만원으로 인상합니다.

■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·육아휴직으로 대체하여 허용시 종전에는 시작 30일 전 이 후 채용에 대해서 지원하였으나, 하반기부터 시작 60일 전 이후에 채용하여라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.

\* (대체인력지원금) 중소기업은 월 60만원, 대기업은 월 30만원 지원

■ 육아직급여는 복귀 후 6개월 계속 근로시 제공하는 사후지급비율을 15%→25%로 확대하여 직장복귀율을 제고합니다.

## 11. 임금체불근로자 지원 강화

■ 임금·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체불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.

- 지금까지 사업주가 도산한 경우에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체불임금을 지급했으나, 2015년 7월부터는 사업주의 도산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에서 체불임금에 대해 확정된 종국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도 300만원까지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합니다.

- 지금 대상은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가능된 사업장(장)에서 퇴직하고,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임금 지급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.

- 다만, 승소 확정판결일자 2015년 7월 1일 이후어야 합니다.

- 또한,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대상을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까지 확대됩니다.

(출처 : 기획재정부 '201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' )

## 충북긴급복지지원센터

# 1688-0012

생활에 도움이 긴급히 필요한 분들에게 상담을 통해 지원을 해드립니다.

복지서비스를 받기 원하신다면 가까운 복지기관을 소개해드립니다.

복지에 대해 궁금하신점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.

총북긴급복지지원센터

\*지원종과 지원액은 상담을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

복지사각지대 이웃 발견

▼

1688-0012 전화

▼

긴급 서비스 지원



# 2015년에도 당신의 인권을 지켜 드립니다!

www.043whr.or.kr

총북사회복지인권지원센터

043)239-8903

사회복지인권지원센터는 전화상담 및 익명게시판을 통해 사회복지현장에서 받은 인권침해나 목적한 이야기를 청취하고, 대응방안 및 해결방안을 전문가들과 함께 모색합니다.



지역	11개 거점 센터	연락처
청주	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	267-0866
충주	충주종합사회복지관	855-3000
제천	제천시의정부나눔클랜더	642-3362
보은	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	544-5451
옥천	옥천노인장애인복지관	733-2500
영동	영동군지역사회복지협의회	742-3700
증평	증평종합사회복지관	838-2875
진천	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	537-5004
괴산	괴산군사회복지협의회	834-1377
음성	음성군사회복지협의회	833-1377
단양	단양군사회복지협의회	422-1700



